

학연교수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연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학연교수는 산업체, 연구소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학연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산업체, 연구소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재직하면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
2. 산업체 또는 연구소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자

제4조(임용절차 및 기간) ① 학연교수는 산학협력단장(부설연구소의 경우는 학장이 부설연구기관장(센터장 포함)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총장의 임용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.(개정 2015.06.16.)

② 학연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.

제5조(임용서류) 학연교수로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
2. 이력서 1통
3.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통
4. 연구경력 증명서 각 1통
5. 주민등록등본 1통

제6조(복무) 학연교수는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되, 필요에 따라서는 본 대학교 강의와 학위논문 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7조(보수) 학연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,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3-2-22~2 제3편 행 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